

2005. 11. 14.(월) 배포

문의 / 통신이용제도와 양환정과장 (750-1350)

김꽃마음 서기관 (750-1351) winheart@mic.go.kr

정통부, 단말기보조금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기간을 3년 연장하되, 허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2005.11.14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3년 기간동안 1회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장기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단말기 보조금 지급 상한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단말기 보조금의 완전허용에 대비한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W-CDMA, WiBro 등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규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미래이동통신시장의 핵심서비스로서 관련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통신시장의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그 상한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부담을 회피하면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은 그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넷째, 3년 이상 장기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시점,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여부 등 장기가입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심의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첨부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1부. (끝).

◎ 정보통신부 공고 제 2005 - 54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4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지원이 허용되는 예외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3년의 기간 내에 1회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함(안 제36조의3제1항제5호가목 신설).
- 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통신역

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내에서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 36조의3제1항제5호나목 신설).

다.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 1인당 지원하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범위내에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제3항 신설).

라. 3년 이상 장기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시점 등 장기가입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36조의3제4항 신설).

마. 별정통신사업자의 구입비용 지원 한도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관리·제공 의무의 위반행위는 금지행위로 봄.(안 제36조의3제5항 신설).

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 750-1351, 팩스 : 02) 750-1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용약관에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려는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 기간통신역무를 3년 이상 연속하여 이용한 이용자에게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3년의 기간내에 1회만 지원하는 행위

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당해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을 조건으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행위

제36조의3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 1인당 지원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④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입기간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입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는 자가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전기통신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6조의3제1항제5호·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6條의3(금지 행위) ①電氣通信事業者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u>各號의 1</u>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 4. (생략)</p> <p>5. <u>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第36條의3(금지 행위) ①</p> <p>-----</p> <p>-----</p> <p>-----<u>각 호</u></p> <p><u>의 어느 하나</u>-----</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전파법</u>」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용약관에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p>

지원하려는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
하는 동일 기간통신역무를 3
년 이상 연속하여 이용한 이
용자에게 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을 3년의 기간내에 1회
만 지원하는 행위

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
통신역무를 이용하려는 자에
게 당해 기간통신역무의 이
용을 조건으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내
에서 지원하는 행위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
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
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
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
자 1인당 지원하는 한도를 초과
하여 이용자에게 통신단말장치
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④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입기간동안 이용자의 가입시
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관

<신설>

<신 설>

③ (생 략)

리하여야 하며, 구입비용을 지원 받거나 지원받으려는 자가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